볼티모어 시
주류 면허
위원회의
주류
관련
규칙 및 규정

2016년 1월 1일 발행

볼티모어 시
주류 면허 위원회

231 East Baltimore Street
6th floor
Baltimore, Maryland 21202

일반 정보……410-396-4377
사무국장…… 410-396-3480
사무차장…… 410-396-4385
주 조사관……410-396-4379
조사관…… 410-396-4384
경영 본부……410-396-4378

모든 면허 소지자 대상 고지 사항:

이 문서는 볼티모어 시 주류 면허 위원회에서 발행한 문서로,
모든 면허 소지자, 해당 직원, 일반인이 볼티모어 시의 주류 소매 영업에 적용되는
규칙과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서입니다.

모든 면허 소지자와 해당 직원은 이 문서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규칙과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효되며 볼티모어 시 주류 면허 위원회가 또는 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사안에 적용됩니다.

Benjamin Neil
위원장

Douglas Trotter
위원

Elizabeth Hafey
위원

Harvey Jones
대체 위원

Michelle Bailey-Hedgepeth
사무국장

Thomas R. Akras
사무차장

볼티모어 시
주류 면허 위원회 규칙 및 규정

1장
총칙, 정의, 면허 유형

규칙 1.01 – 정의

(a) "알코올 인지 프로그램"이란 메릴랜드 주 감사관이 승인하고 인증했으며 메릴랜드 주 감사관이 허용한 알코올 인지 프로그램으로, 2B조 § 13-10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코올이 사람의 신체와 행동에 주는 영향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음주 운전 위험 관련 교육을 제공하며, 고객의 만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정의합니다. 또한 고객이 만취하기 전에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지침과, 고객이 21세 미만인지 확인하는 지침도 포함됩니다.

(b) "주류"란 명칭에 관계없이 용량의 0.5% 이상이 알코올이며 음용 가능한 액상 제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c) "자술서"란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선서 진술인이 서면으로 제시한 사안과 사실이 자신의 지식, 정보, 신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임을 확인 또는 선서하는 과정을 관리 권한이 있는 책임자나 기타 담당자 앞에서 수행하는 선서 또는 확인을 의미합니다.

(d) "2B조"란 메릴랜드 주 주해 규정의 주류 관련 조항(2B조)을 의미합니다.

(e) "변호사"란 메릴랜드 최고 법원에서 허가한 법조인을 의미합니다.

(f) "맥주"란 모든 양조 주류를 의미합니다. 맥주에는 알코올이 총 용량의 6% 이하이고, 주로 곡물 발효 방식으로 생산되며, 첨가물 및 알코올이 들은 기타 추가 비음료 원료에서 추출한 음료 내 총 알코올 성분이 총 용량의 49% 이하이고, 알코올이 총 용량의 6%를 초과하고, 기본적으로 곡물 발효 방식으로 생산하고, 첨가물 및 알코올이 들은 기타 추가 비음료 원료에서 추출된 음료 내 총 알코올 성분이 총 용량의 1.5% 이하인 주류와 맥주, 에일, 흑맥주, 스타우트, 발효 사과술이 포함됩니다.

(g) "위원회"란 볼티모어 시 주류 면허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h) "출장 연회 업체"란 면허 취득 시설에서 열리는 공개/비공개 행사의 후원자에게 음식과 주류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맥주/와인 또는 맥주/와인/주류 면허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i) "클럽"이란 교육, 사회, 친목, 애국, 정치, 체육과 관련하여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만 설립되고 운영되는 협회,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2B조 § 1-102(a)(4)(I)항. 2B조 §7-101(b)항 및 2B조 §7-101(d)항에 따라 맥주, 와인, 주류 면허를 신청하는 클럽에는 이 정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j) "감사관"이란 메릴랜드 주 재무부 감사관을 의미합니다.

(k) "계약 구매자"란 공개 시장에 면허 및/또는 사업권을 판매하기 위해 현재 유효 면허 소지자로부터 면허 및/또는 사업권을 구매하는 개인, 기업 또는 조합을 의미합니다. 계약 구매자가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여 위원회나 위원회의 지정자가 해당 문서를 승인해야 적법한 계약 구매자로 인정됩니다. 계약 구매자는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2B조에 규정된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용으로 주류 판매 면허를 소지하는 행위만 가능합니다.

(l) "시"란 메릴랜드 볼티모어 시를 의미합니다.

(m) "호텔"이란 일반 고객용 숙박 시설 면허를 받은 시설로, 일반 고객 투숙용 객실 100개 이상과 단일 장소에서 최소 125명 인원의 정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설비가 갖춰진 식당을 포함하며, 호텔 설비의 자본 투자 금액이 $5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n) "면허를 받은 시설"이란 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시설을 의미하며, 면허를 받은 시설의 고객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및/또는 승인을 받은 실외 카페 영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o) "면허 취득자" 또는 "면허 소지자"란 2B조 또는 메릴랜드 주의 기타 법률에 따라 발급된 면허나 허가를 소유한 사람이나 업체를 의미합니다.

(p)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란 보상이나 입장료 유무에 관계없이 한 명 이상이 시연하는 (1) 음악 활동(노래방 포함), (2) 무대극(스탠드업 코미디 포함), (3) 연극, (4) 가극, (5) 무용, (6) 마술, (7) DJ 또는 (8) 그와 유사한 하나 이상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정의는 시의 토지 이용 규정 개정안 또는 수정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공포한 성인용 엔터테인먼트 규칙에 따라 정의된 성인용 엔터테인먼트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혼합주"란 비알코올성 음료 및/또는 식품과 하나 이상의 주류가 결합된 원료를 사용한 음료를 의미합니다.

(r) "비영리 조직"이란 내국세입법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법인, 재단 또는 기타 법적 단체를 의미합니다.

(s) "기록 당사자"란 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안과 관련해 공청회에 참석하여 증언을 하고 반대 심문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t) "고객"이란 어떤 시설 구역 내의 손님, 방문객 또는 기타 초청객을 의미합니다.

(u) "금전상의 이익"이란 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주류 판매로 창출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을 자격을 제공하는 면허 소유 사업체의 법적 또는 형평법상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직원, 관리자, 저당권 설정자, 임대주, 채권자 또는 면허 소유 사업체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금전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개/비공개 거래 사업체의 주식 소유권은 해당 주식의 소유자가 사업체를 상당 수준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 본 규칙 및 규정의 적용 목적에 따라 금전상의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v) "개인"이란 자연인, 협회, 조합, 법인, 유한 회사 또는 기타 법적 단체를 의미합니다.

(w) "갱신"이란 기존 면허를 동일 시설,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종류로 재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x) "음식점"이란 대개 일반 고객이 이용 가능한 면허 취득 시설로, 정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설비가 갖춰진 식당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경우 일일 음식 판매로 인한 수입이 총 일일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마실 수 있도록 주류를 준비할 때 사용되거나 혼합되는 원료 또는 장식용 재료는 "음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는 시설 내에서 준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식탁, 의자, 식기류, 유리 그릇을 구비한 공용 식당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온/냉 식사류를 준비하여 일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설비와 기구를 모두 갖춘 주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는 모든 손님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직원을 충분히 고용해야 하며, 메뉴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에 항상 충분한 식재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B조에 따르면 주류 관련 개별 관할지의 위치에 따라 음식점에 보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특정 사업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알코올 판매 수입, 최소 자본 투자금, 좌석수, 음식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2B조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y) "소매업자"란 면허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거래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z) "담보 당사자"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담보의 미결제 채무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 계약에 따라 선취특권이 발생하거나 제공되는 자

(2) 농업권을 보유한 자

(3) 위탁자

(4) 계좌, 동산 문서, 무형 지급금 또는 약속 어음 판매 대상자

(5) 선취 특권 또는 농업권이 발생하거나 제공되는 신탁 관리자, 계약 신탁 관리자, 대리인, 담보 보증 대리인 또는 기타 대표자

(6) 메릴랜드 상법 규정 주해 § 2-401, § 2-505, § 2-711(3), § 2A-508(5), § 4-210 또는 § 5-118항에 따라 발생하는 선취 특권을 보유한 자

(7) 중요: 담보 당사자의 특권에는 2B조에 명시된 모든 제한이 적용됩니다.

(aa) "주"란 메릴랜드 주를 의미합니다.

(bb) "총 일일 수입"에는 보통 모든 식음료 판매 수입이 포함되지만 단독 상품 판매 수입, 자동 판매기 수입 또는 식품/음료 판매 이외의 기타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cc) "와인"이란 모든 발효 음료를 의미하며, 낮은 도수의 와인과 알코올, 주정 또는 기타 원료를 추가하여 알코올 성분을 강화한 와인을 포함합니다.

규칙 1.02 – 권한

메릴랜드 주해 규정 2B조(개정)에서 허여한 권한에 따라, 2B조를 통해 위원회에 부과되는 의무에서 메릴랜드 볼티모어 시 주류 면허 위원회가 면책되도록 다음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합니다. 2B조, 상기 규칙 및 규정, 그리고 메릴랜드 주법의 기타 조항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2B조 또는 그와 동등한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규칙 1.03 – 조직

(a) 위원회는 정식 위원 3명과 대체 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모두 메릴랜드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임명 시에는 메릴랜드 주 상원(개원 시)의 권고와 동의가 필요하며, 상원이 개원 중이지 않으면 주지사가 단독으로 임명합니다.

(b) 대체 위원은 위원회 정식 위원의 부재 또는 사퇴 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임명자는 볼티모어 시의 거주자이자 유권자여야 하며 평판, 성실성, 사업 능력을 인정받은 개인이어야 합니다. 임명자 한 명 이상이 메릴랜드 최고 법원에서 위원 역임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c)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해당 기간은 임명 년도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규칙 1.04 – 권리

(a)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에서 2B조에 따라 승인되는 주류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b) 사업체 소재지의 공동체 안녕이나 안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2B조나 본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유예 또는 해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예 명령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 청원이 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순회 재판소, 특별 상고 법원 또는 최고 법원의 최종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명령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면허 해지 명령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 청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고를 접수한 법원만이 명령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최초 위반 시 위원회는 $5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최초 위반이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인 경우 위원회는 $1,0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 위원회는 $3,0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 위원회는 최소 5년마다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검토하여 위원회, 연방, 주, 지역법의 현재 정책과 관행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면허 소지자가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동체의 안녕과 안전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면허나 면허 양도 및/또는 갱신 허여에 대해 적절한 조건 및/또는 제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1.05 – 법정 대리

변호사는 항변하거나 고소하려는 당사자, 신청자, 증인 또는 개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항변/고소자에게 또는 항변/고소자가 통지를 하는 경우 위원회가 고려할 사안과 관련해 변호사가 출두했다면 해당 변호사에게도 또는 변호사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규칙 1.06 – 분리 가능성

본 규칙 및 규정에 포함된 규칙이나 규정이 관할 법원의 최종 결정에 의해 헌법에 위배되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본 규칙 및 규정에 나온 그 외 모든 규칙/규정과 해당 규칙/규정의 다른 모든 사람 및 상황에 대한 적용은 분리 가능하며 해당 최종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규칙 1.07 – 시간

본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허용되거나 규정된 기간을 계산할 때는 메릴랜드 의사 규칙에서 제공하는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규칙 1.08 –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면허

(a) 2B조에서 허용하는 면허를 제외한 신규 주류 면허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b) 이 규칙이 적용되어도 갱신이나 양도/이전 시 2B조의 내용을 따르는 한, 면허 갱신이나 소유권 양도 및/또는 면허 위치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c) 2B조에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류 면허는 어느 때든지 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규칙 1.09 – 부수적 권리

(a) **신청 및 위원회의 공청회가 필요한 부수적 권리**

(i)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시의 토지 이용 규제법, 규칙,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금지되지도 않았으며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허 소지자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i) **실외 식탁 또는 카페 서비스**: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시의 허가에 따라 실외 식탁 또는 카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ii) **출장 연회권 면허**: 출장 연회 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할 권리는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에 출장 연회권 신청을 접수해야 허여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출장 연회권 신청을 승인하면 출장 연회권 면허가 발급됩니다. 특별 오프세일 출장 연회 업체권을 소유한 면허 소지자는 출장 연회 행사용 음식 및 주류 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자신이 소지한 맥주/와인 또는 맥주/와인/주류 면허로 허용되는 날짜와 시간 동안에만 특별 오프세일 출장 연회 업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 오프세일 출장 연회 업체권을 소유한 면허 소지자는 음식을 준비하여 출장 연회 행사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 위생국은 위원회가 특별 오프세일 출장 연회 업체권을 추가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음식 준비 설비를 승인하고 출장 연회 업체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특별 오프세일 출장 연회 업체권은 갱신 가능합니다.

(iv) **특별 오락 면허**: 위원회는 D등급 면허 소지자에게 특별 오락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는 가창, 무용, 음악(녹음된

음악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은 제외), 무대 쇼, 서커스, 무대극 또는 영화와 같은 승인된 유형의 오락을 진행할 때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b) **기타 부수적 권리**

(i) **리필 가능 용기 면허**: 리필 가능 용기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시설의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0.9리터(32온스)~3.8리터(128온스) 용량의 리필 가능한 컨테이너로 생맥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신청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설 외 장소에서의 판매권이 없는 면허를 소지한 신청자는 신청자가 소지한 면허와 동일한 광고, 통지 게시, 공청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리필 가능 용기를 통해 판매하는 모든 생맥주는 자정을 기해 종료해야 합니다.

(ii) **임시 면허 시설 확장**: 임시 면허 시설 확장 허가를 받은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시설의 외부 지역 및/또는 시가 승인한 영역으로 발급된 허가에 따라 주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고객이 주류를 소지한 상태로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시설의 주류 판매와 섭취를 고정된 영역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I) A등급/A-2등급 면허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연간 면허 소지자에게 확장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확장되면 면허 소지자는 해당되는 경우 확장 영역의 시설에서 맥주, 와인 및/또는 주류를 판매하고 제공하며 음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II) 확장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는 확장을 원하는 행사 개최 최소 10일 전에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거나 지정하여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i) 확장의 목적

(ii) 확장 면허를 사용할 행사 개최 시간/날짜/위치

(iii) 확장 영역의 규모

(iv) 주 대행사와 지역 대행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허가와 승인 증명서

(v) 신청료 요금 납입금

(III)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신청서, 과거의 임시 면허 확장 내역, 해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의 추가 정보나 추가 결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규칙 1.10 – 비영리 클럽/단체/연합용 임시 특별 행사 면허

(a) 2B조에 따라 선의의 클럽, 단체 또는 연합에 대해 특별 맥주/와인 또는 맥주/와인/주류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b) 이 규칙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려는 신청자는 예정된 행사 최소 10일 전에 신청서와 서면(해당 단체의 이름 등이 인쇄된 편지지 사용)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서면에서 행사의 목적, 행사 시간/날짜/위치, 그리고 21세 미만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해 적용할 통제 방식을 위원회에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전단이나 초대장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c) 기타 정부 기관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자는 면허 발급 전에 해당 허가 또는 승인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d) 또한 신청자는 신청자의 비영리 상태를 나타내는 국세청의 문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현재 메릴랜드 주 면세 증명서 사본을 서면 대신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모조직 또는 상부조직의 자조직이거나 이 규칙에 따라 적격 조직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는 해당 관계를 명시하는 서면을 관련 조직으로부터 받아서 제시해야 합니다.

(e) 국세청의 문서 또는 메릴랜드 주 면세 증명서가 없는 신청자는 단체/연합 회원 자격을 나타내는 단체/연합 조례 및 인가 조항의 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위원회는 해당 단체/연합에서 신청자의 회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 식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와인 시음 면허에는 이 관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 임시 특별 행사 면허 신청서의 예상 참석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의 과거 면허 내역, 시 대행사에서 제시한 설명이나 문제점, 면허 소지자의 신청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제기하는 이의 문서나 전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 사항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g) 위원회 행정 담당관은 신청 날짜에 모든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위원회에 제출되었다면 신청서를 검토하여 조건부로 신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h) 예정된 행사까지 남은 기간이 10일 미만인 시점에 신청자가 임시 특별 행사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 행정 담당관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간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신청서 검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규칙 1.11 – 시식, 시음, 축제용 임시 면허

(a) **맥주/와인 시음 – 1일 면허**: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특별 맥주/와인 면허로, 2B조에 따라 시식 또는 시음용으로 시설 내의 와인 및 맥주 섭취를 허용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위원회는 A등급 맥주/와인 면허 소지자 또는 A등급 맥주/와인/주류 면허 소지자에 한해 이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b) **맥주/와인/주류 시음 – 1일 면허**: 위원회가 A등급 맥주/와인/주류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하는 특별 맥주/와인/주류 면허로, 시설 내에서의 맥주/와인/주류 시음을 허용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위원회는 2B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시식 및 시음용 맥주/와인/주류를 시설 내에서 섭취 가능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c) **와인 시음 – 1일 면허**: 위원회에서 선의의 비영리 조직에 대해 발급하는 특별 면허로, 2B조에 따라 시음용 와인 운송 및 섭취를 허용합니다.

(d) **볼티모어 와인 축제**: 소지자가 지정된 BWF(볼티모어 와인 축제) 날짜/시간 중에 허가를 받은 시설 내외부에 섭취용 와인을 전시하고 소매가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 볼티모어 와인 축제 면허입니다.

(e) **볼티모어 맥주 축제**: 위원회는 2B조에 따라 B등급 소매 허가 시설 또는 시 내에 있는 미허가 시설에서 개최되는 맥주 축제 참가용 특별 볼티모어 맥주 축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 **비영리 조직 맥주 축제**: 위원회는 내국세입법에 정의된 비영리 조직에 맥주 축제 참가용 특별 비영리 조직 맥주 축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규칙 1.12 – A등급 및 D등급 면허 소지자용 특별 일요일 1일 면허

(a) **A등급 – 특별 일요일 면허(추수 감사절~1월 1일)**: 위원회는 A등급 주류 면허 소지자에게 특별 일요일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의 소지자는 2B조에 따라 추수 감사절에서 1월 1일 오후 1시~9시 사이의 기간 내 일요일에 오프세일 면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b) **A등급 – 특별 일요일 면허(추가 2일)**: 위원회는 A등급 주류 면허 소지자에게 특별 일요일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의 소지자는 2B조에 따라 역년 동안 추가 2일의 일요일에 오프세일 면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 **D등급 – 일요일 보충 면허**: 위원회는 D등급 맥주/와인/주류 면허 소지자에게 역년 동안 4회까지 보충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의 소지자에게는 2B조에 따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주류 판매 권한이 부여됩니다.

2장
신청 및 공청회 절차

규칙 2.01 – 신청자

(a) **단독 신청자**: 단독 신청자의 신청에는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직전 최소 2년 동안 시의 거주자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조합**: 조합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조합원 개개인에게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모든 조합원은 신청서 제출 직전 최소 2년 동안 시에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개별 조합원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무한 책임 조합원이 한 명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개인 자격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조합원은 신청 당시 볼티모어 시의 거주자이자 등록 유권자여야 합니다. 조합원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c) **법인 또는 클럽**: 법인 또는 클럽이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클럽의 임원 3명이 신청을 해야 하며, 면허는 법인이나 클럽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책임자에게 개인 자격으로 발급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이러한 개별 책임자 중 한 명 이상이 시의 등록 유권자이자 납세자여야 하며 신청 전 최소 2년 동안 시에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법인이나 클럽에 속한 임원의 이름과 주소를 전부 명시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나 클럽의 사장/부사장(회장/부회장)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대상인 임원 3명도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가 3명 미만이면 모든 임원이나 이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비공개 법인에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주주 한 명 이상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d) **유한 회사**: 유한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한 회사의 공식 관계자 3명이 신청해야 하며, 면허는 각 직원에게 개인 자격으로 발급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이러한 공식 관계자 중 한 명 이상이 시의 등록 유권자이자 납세자여야 하며 신청 전 최소 2년 동안 시에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직원은 주류 면허를 소지한 기간에 계속해서 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유한 회사의 공식 관계자가 3명 미만인 경우 모든 공식 관계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유한 회사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2012년 6월 1일이나 그 이전에 허여된 주류 면허를 소지한 유한 회사의 공식 관계자는 시의 등록 유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규칙 2.02 – 신규/양도/개정 신청

(a) **신청:** 위원회에 신규 면허, 면허 양도, 시설 확장, 책임자/거주 대리인/면허 등급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위원회에서 발급하며 감사관이 요구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자의 직접 감독 하에 작성해야 하며, 판독 가능하도록 검정색이나 파란색 잉크를 사용해 활자체로 작성하거나 인쇄해야 합니다.

(i) 모든 신청 시 선서를 해야 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증인이 입회해야 합니다.

(ii) 모든 신청서는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완성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신청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청회 날짜가 예약되지 않습니다.

(iii)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나 양도를 위한 각 신청서를 점검하여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iv)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서가 완료됩니다.

(A) 신청자가 시의 토지 이용 규제 승인 또는 토지 이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필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위원회에 납부할 모든 과태료와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b) **신청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기준:** 위원회는 신청을 승인하고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 해당 면허에 대한 일반 시민의 요구 및 요청

(ii) 기존 면허 소지자의 수 및 신청한 면허가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주는 잠재적 영향

(iii) 신청자의 기업이 제공하게 될 서비스 및 제품의 잠재적 공용성 또는 특이성

(iv) 범죄, 교통 상황, 주차 또는 편의성 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공동체의 전반적인 보건, 안전, 복지에 주는 영향

(v)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타 필수 요인

(c) **위원회의 신청 거부 기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신청은

거부되며 신청한 면허의 발급이 거절됩니다.

(i) 일반 시민을 수용하기 위해 면허를 허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

(ii) 신청자가 신청 대상 면허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경우

(iii) 신청자가 신청서에 물질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iv) 신청자가 신청과 관련하여 사기 행위를 한 경우

(v) 면허 허여 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장 인근 주민의 안녕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경우

(vi)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기타 이유가 있는 경우

(d) 위원회의 기타 결정 요인: 위원회는 신청을 승인하고 면허를 발급할지 아니면 신청을 거부할지 결정하기 전에 2B조에서 요구하는 기타 해당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e) 면허 소지자의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신규 면허, 기존 면허 양도, 기존에 허가된 시설의 확장 또는 기존 면허 갱신을 발급받으려는 면허 소지자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i) 2B조(해당되는 경우 대량 양도 허가 받기 및 필요한 경우 모든 인적 재산, 소매 판매, 원천세 납부 포함)

(ii) 모든 주 및 볼티모어 시 대행사의 규칙 및 규정

(iii) 위원회가 면허 발급 시 적용하는 기타 조건 또는 규정

규칙 2.03 – 대리 신청

(a) **보고 요구 사항**: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조금이라도 변경된 경우 기한 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전화 번호/주소 변경, 면허 소지자 사망, 법인 폐업,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로 등재된 책임자 또는 공식 관계자 선출/변경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수수료**: 면허 소지자가 면허 소지자 제거/추가/대리를 위해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료($250) 및 발급료($200)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c) **회사 임원, 조합/LLC의 공식 관계자 대리**: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변경할 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위원회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하여 회사 책임자 또는 공식 관계자의 대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ii) 대리 내용을 설명하는 공식 관계자의 자술서와 변경된 소유권이 50%를 초과하여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해당 단체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ii) 원래 기업 담당자 또는 공식 관계자의 서명된 사직 서신 및/또는

(iv) 허가된 시설에 대한 면허 양도 소유자의 소유권 지분이 50% 미만임을 나타내는 설명과 양수자의 이름 및 정보를 포함한 서명된 계약서 사본 및/또는(해당하는 경우)

(v) 기업 임원 또는 공식 관계자의 대리를 진술하는 해당 기업 또는 유한 회사 회의록 또는 결의안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d) **담보 당사자 대리**: 담보 당사자가 의무 불이행 면허 소지자 대신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면허 소지자와 담보 당사자가 서로 서명한 계약서 또는 임대 계약 사본 등의 담보 계약 사본

(ii) 면허 소지자가 담보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시하며, 담보 당사자가 담보 계약을 통해 발생한 담보 당사자의 특권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면허 소지자에게 발송된 의무 불이행 통지서 사본

(e) **계약 구매자 대리**: 개인, 법인 또는 조합이 계약 구매자로 지정받기 위해 대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매도 증서 사본. 여기에 양수인의 신원, 계약 구매자, 양도할 특정 면허, 그리고 거래 목적이 계약 구매자의 사업 운영용이 아니라 면허 판매용임을 규정하는 진술서도 포함

(ii) 서명 및 공증된 양도 승인 및 이전 소유자의 규정 준수 자술서

(f) **면허 소지자 사망 시 면허 소지자 사유지 인격 대리인의 대리 신청**: 2B조

§10-506(a)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사망 시 사망자 사유지의 인격 대리인이 허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허용되면 인격 대리인은 사유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동안 면허 발급 후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18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허가 증명서 수수료는 $1입니다. 인격 대리인의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사망한 면허 소지자의 공식 사망 증명서 사본
(ii) 사망자 관할지의 유언 검증관이 승인한 집행 서신의 등본

(iii) 신청자가 사망자 사유지의 인격 대리인인지 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의 신원 증명

(g) **면허 소지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동거자의 대리 신청:** 2B조 §10-506(a)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사망 시 생존 배우자, 파트너 관계의 생존 동거자 또는 법인의 생존 선임 책임자가 대리 신청을 통해 면허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는 면허 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사망한 면허 소지자의 공식 사망 증명서 사본

(ii) 사망자 관할지의 유언 검증관이 승인한 집행 서신의 등본

(iii) 신청자가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 파트너 관계의 생존 동거자 또는 법인의 생존 선임 책임자인지 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신원 증명

(h) 대리 신청을 통해 면허 대상으로 지정된 새 면허 소지자의 2B조 § 10-103항 요구 사항 충족

(i) 위원회 행정 담당관은 기존 면허에 대한 신규 거주 신청자로 면허 소지자가 제시한 사람을 면담하여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이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 정기 지정 회의 때 최종 승인을 결정합니다.

규칙 2.04 – 갱신

(a) **갱신 신청**

(i) 갱신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해 매년 3월 1일~3월 31일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된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거나 신청자의 직접 감독 하에 기입해야 하며, 판독 가능하도록 검정색이나 파란색 잉크를 사용해 활자체로 작성하거나 인쇄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한을 넘긴 신청서를 접수해서 신청이 늦은 날짜당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과태료를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연 신청 과태료의 총 금액은 $1,5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ii) 만료 예정인 면허가 제한되거나 유예된 경우 신규 면허는 동일한 제한 또는 유예가 적용된 상태로 발급됩니다.

(iii) 갱신 신청서 제출 시 처리 수수료($50)를 납부해야 합니다.

(iv)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위원회는 신청서가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와 첨부 문서가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모든 미납 수수료 및/또는 과태료를 수령하는 즉시 면허를 발급합니다.

(v) 모든 면허 소지자는 시에서 발급한 규정 준수 서신 또는 재무담당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갱신 연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시 또는 주에서 부과한 세금 또는 수수료가 미납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vi) 모든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 연도에 볼티모어 시 순회 재판소 서기가 발급한 유효 상거래 면허의 사본을 갱신 연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vii) 위원회는 면허 연도 중에 면허 소지자가 갱신 면허를 받기에 부적합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주 또는 연방 범죄 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습니다.

(viii) 범죄 유죄 판결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기 전에 위원회는 먼저 유죄 선고와 관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제시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ix) 허가된 시설에 대한 갱신 면허를 개업일 5월 1일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면허 소지자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본 규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x) 허가된 시설에서 시의 토지 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면허 갱신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b) **갱신 이의**

(i) 면허 갱신에 대한 이의는 면허 연도 3월 1일~3월 31 사이의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3월 31일 업무 시간 종료 전까지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는 허가 대상 사업장 인접 지역의 거주자, 주류 면허 소지자나 신청자가 아닌 상업적 세입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 1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합니다.

(ii) 모든 이의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고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iii) 공청회 이후에는 이의나 이의 철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규칙 2.05 - 면허 양도

(a) 한 명 이상의 면허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허가된 시설의 소유권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i) 제안된 양도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완성된 서면 주류 면허 양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접수하는 경우

(ii) 기록에 등재된 현재 모든 면허 소지자가 서명한 양도 자술서를 한 명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제출하는 경우

(iii) 양도인에게 부과된 모든 주세 및 지역세를 납부한 경우

(b)(1) 이 관의 (2)항에서 설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인이 시 또는 주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위원회는 면허 양도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2) 양수인이 공증인의 입회 하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서면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날짜나 그 이전에 채무액이 결제되면 위원회는 임시로 양도 신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c) 동일 위치의 소유권 양도에 대한 공청회 중에 위원회는 양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2B조 §10-202(a)(2)항에 명기된 요인을 고려합니다.

(d) 면허를 주류 면허가 이미 있는 기존 위치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위치에 적용되고 있는 면허를 새로운 위치의 신규 소유권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신규 면허를 기존 위치에 양도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 (1) 시설이 폐쇄되었던 기간이 양도 신청 날짜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해 공공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 재개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채권자의 조치 또는 기타 재정적 문제(예: 미국 통일상법전, 주 법원, 보안관, 내국세입법 또는 메릴랜드 판매세과의 조치에 따른 법정 관리자, 신탁 관리자, 담보 당사자로의 양도)로 인한 양도 시 위원회는 시설 폐쇄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의 편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대상 위치의 면허 양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의 편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4) 2B조 § 10-202(e)(2)(iv)항에 따라 채권자의 조치로 인한 양도, 화재, 인명 피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이 폐쇄된 상태이면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f)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적절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가 위원회의 양도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 주 또는 시의 해당 부서나 대행사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위원회의 자체 요구 사항도 포함됨)을 받아야 합니다.

(g) 2B조에 따른 모든 양도는 2B조 § 10-503(d)(4)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조항의 내용을 2B조 § 10-504(d)항 및 기타 해당 연방/주/지역 법규와 함께 해석합니다.

규칙 2.06 – 통지 및 공청회

(a) **신규 신청/양도/개정:**

(i) 면허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위원회는 볼티모어 시에서 현재 발행 중인 신문 3개에 2주 연속으로 매주 2회 신청 통지를 게재해야 합니다.

(ii) 이 통지에는 각 신청자의 이름, 신청한 면허 종류, 면허가 제안된 사업장 위치, 신청 시 위원회가 규정한 공청회 시간과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iii) 마지막 통지 게재 날짜로부터 7일~30일 이외의 기간에는 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iv) 위원회는 신청서에 명시된 시설과 관련해 잘 알려진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최소 10일 동안 적절한 표지나 통지문을

게시하고 게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문에서는 신청한 면허 등급과 공청회에 대해 위원회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v) 신청자가 연기를 요청하더라도 공청회에서는 모든 관련자가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vi) 공청회에서 위원회는 2B조 § 10-202(a)(2)항에 명시된 요인을 고려해 요청된 조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b) **위반 통지 및 공청회**:

(i) 위원회 조사관을 포함한 여러 연방/주/지역 책임자가 허가된 시설에 대한 사고/위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위원회 책임자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추가 조치에 대한 근거를 결정합니다.

(ii) 보고서를 예비 검토한 후 위원회 책임자는 주류 관련 규칙, 규정 또는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소 내용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주제가 됩니다. 기소 내용은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공청회에서 위원회에 제시됩니다.

(iii) 위원회는 주류 관련 규칙, 규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해 면허 소지자에게 제기되는 기소 관련 공청회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소환장을 면허 소지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1) 면허증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면허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

(2) 면허 소지자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규칙, 규정 또는 법률. 특정 사안과 관련된 경우 위반 날짜도 포함

(3) 공청회 시간 및 장소

(iv) 다음을 비롯한 여러 방식으로 면허 소지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개인 서비스

(2) 면허 소지자 소유의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3) 면허 소지자의 변호사나 대표자에 대한 서비스

(4) 내용 증명을 통한 서비스

(v) (1) 업무 시간 동안 허가된 시설의 직원에게 서비스를 3회 시도한 후에 내용 증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내용 증명을 통해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주소를 사용하여 기록에 기재된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부담 문서 사본을 발송합니다. 위원회는 내용 증명 이외에도 부담 문서 사본을 포함한 문서를 통해 허가된 시설에 대해 공시합니다. 내용 증명과 일반 우편물 1통이 발송되고 해당 시설에 대해 공시하면 면허 소지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화재, 인명 피해, 천재지변 또는 채권자의 조치로 인해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위원회가 확인했으며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개인 서비스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원회는 내용 증명 및 일반 우편을 통해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주소를 사용하여 기록에 기재된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부담 문서 사본을 발송합니다.

(vi) 위원회는 공개 기록 정책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은 공청회 전에 면허 소지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송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vii)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증언을 청취하고 면허 소지자가 기소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증인에게 반대 심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인과 증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viii) 위원회는 공청회에 증거로 허용할 사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ix) 위원회는 우세한 증거를 고려하여 면허 소지자의 위반 행위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x) 위원회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2B조 § 16-507항에 제시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xi) 위원회의 주류 관련 법률 또는 규칙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기록은 후속 위반 사례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xii)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의 위반 여부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유예 또는 해지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면허 유예 또는 해지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허권 유예는 연속 일수로 적용해야 합니다.

2.07 – 공청회 준비를 위해 위원회에 자료 제출

(a) **증거 서류**: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공청회 최소 48시간 전에 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도록 문서, 사진, 비디오 또는 기타 증거 항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 제출한 항목은 위원회가 증거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가중치를 적용해 고려합니다.

(b) **연기 요청**: 위원회의 공청회 전에 사례를 연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은 공청회 날짜로부터 최소 48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제출한 요청의 경우 사무국장과 위원장이 검토한 후 공청회를 연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규칙 2.08 – 면허 발급 또는 양도에 대한 이의

(a) **정의**: (i) **"물적 재산 또는 임차 재산 소유자"**에는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임차시설 개량권 소유자와 시/주가 포함되며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ii) **"세입자"**란 단일 가구용 주택을 임대하여 위원회의 공청회 직전 최소 1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b) **50% 규칙**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허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i) 신청 대상 사업장의 61m(200피트) 이내 범위에 있는 물적 재산 또는 임차 재산 소유자의 과반수가 면허 허여를 거부한 경우 또는

(ii) 신청 대상 사업장의 61m(200피트) 이내 범위에 있는 물적 재산 또는 임차 재산 소유자와 세입자를 합하여 과반수가 면허 허여를 거부한 경우

(c) **광범위 예외** – 양도 대상 면허가 동일 시설에 대해 현재 발급된 면허보다 범위가 더 넓거나 허용 등급이 더 높은 경우 본 규칙이 해당 면허 양도 신청에 적용됩니다.

(d) **개인 이의 신청자에 대한 지침 – 소유자 및 임차인**: 주택 소유자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지지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각각 0.5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공동 임대 방식 재산의 경우 세입자 한 명이 공청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세입자의 이의는 자술서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i) 이의 제기자가 제안된 시설의 61m(200피트) 이내 범위에 있는

물적 재산 또는 임차 재산의 소유자임을 명시하는 진술서

(ii) 재산에 대한 설명

(iii) 진술인이 면허 발급이나 양도를 반대함을 위원회에 진술하는 진술서

(iv) 진술인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이유를 명시하는 진술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타당한 참석 불가 이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기타 물리적 장애(단, 면허를 가진 의사가 해당 질병이나 장애를 확인하고 서명한 서면 진술서를 진술인이 제시하는 경우는 제외됨) 및/또는

(2) 직장 또는 업무 관련 이유(단, 고용주가 서명한 서면 진술서를 진술인이 제시하는 경우는 제외됨) 및/또는

(3) 관할지 미거주(단, 진술인이 시에서 80km(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됨)

(e) **공공 재산 소유자에 대한 지침** - 시/주는 특정 건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 물적 재산 또는 임차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며, 시/주는 시장과 시의회의 공식 대리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주가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61m(200피트) 이내 범위에 있는 건물을 두 곳 이상 소유하는 경우 사업장에 가장 가까운 건물만이 이의 제기 기준이 됩니다.

규칙 2.09 - 회원제 클럽

C등급 면허 소지자를 제외한 어떤 면허 소지자도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회원제 클럽으로 허가된 시설이나 해당 시설의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규칙 2.10 - 복수 신청

특정 위치에 대한 신규 면허, 확장 또는 양도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신청자는 거부 후 6개월 동안 동일한 면허, 권리 또는 양도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단, 공청회 전까지 남은 시간이 48시간보다 많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규칙 2.11 - 재심 발의

(a) 위원회 결정 내용의 재심 발의를 요청하려는 면허 소지자나 기록 당사자는 결정이 내려진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발의를 접수해야 합니다. 발의는 위원장에게 발송됩니다.

(b) 요청에는 결정 내용을 재심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결정이 사기, 예기치 못한 기습,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결과라는 내용이나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새롭거나 다른 사실적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c)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 면허 소지자 또는 기록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사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발의 당사자의 재심 발의를 검토할 사법권을 상실하게 되며 발의 내용은 미제로 간주됩니다.

규칙 2.12 – 항소

(a) 명령의 위헌 법률 심사 청원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기록 당사자는 시의 순회 재판소 서기에게 위헌 법률 심사를 청원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명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해야 합니다. 접수 시에는 위원회에 수수료로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b) 증언 속기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위헌 법률 심사 청원이 기록된 후 5일 이내에 속기사에게 속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c) 위원회의 지정자는 속기록을 수령한 후 기한 내에 속기록 사본 4부를 만들어 1부는 순회 재판소에 해당 사례 번호에 맞게 등록하고, 1부는 위원회의 항소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1부는 속기록을 요청한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변호사나 대표자에게 전달하고, 마지막 1부는 위원회가 보관합니다.

규칙 2.13 – 조사

2B조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위원회 위원, 위원회 직원 및 기타 모든 법 집행 책임자는 공무 수행 시 게시된 운영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색 영장 없이도 허가된 모든 시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은 공무 수행 중인 책임자가 허가된 시설 내로 진입하여 시설을 조사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규칙 2.14 – 연속으로 3개월을 넘게 폐쇄한 시설의 재개장 요청

(a) **절차:** 시에 위치하여 연속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폐쇄되어 있던 허가된 시설을 재개장하려면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재개장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i) 공청회 및 재개장 승인 요청

(ii) 시설이 폐쇄된 대략적인 날짜

(iii) "재무담당관"에게 지급할 $100 금액의 수표 또는 우편환(공청회 비용)

(b) **위원회 승인 후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위원회에서 재개장 승인을 받으면 신청자는 재개장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위원회 행정 담당관에게 다음 문서 및/또는 정보의 최신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i) 상거래 면허

(ii) 시 위생 허가증(해당하는 경우)

(iii) 시 사용 및 입주 허가증(해당하는 경우)

(iv) 판매세 납부증

(v) 면허를 소유한 법인이 현재 운영 중이며 주 심사 및 납세과를 통해 자산 상태가 우량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규칙 2.15 - 180일 동안 폐쇄되었던 허가된 시설에 대한 고난 기간 연장 요청

(a) **절차:** 2B조의 내용에 따라 최대 180일 동안 폐쇄돼었던 시 내의 허가된 시설을 재개장하려면 해당 면허 소지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고난 기간 연장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i) 18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는 고난 기간 연장 요청서

(ii) 시설이 폐쇄된 대략적인 날짜 및/또는 마지막 운영 날짜

(iii) 180일 동안 시설을 폐쇄하게 된 원인인 부당 고난에 대한 간략한 설명

(iv) "재무담당관"에게 지급할 $100 금액의 수표 또는 우편환(공청회 비용)

(b) **위원회에서 고려할 기준:** 검토 시 위원회는 고난 기간 연장을 허여하기로 결정을 내릴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 부당 고난의 있는 그대로의 속성

(ii) 해당 면허 소지자를 대신한 증인의 기록을 통해 제출된 증언이나 증거(면허 소지자에게 부당 고난 기간 연장을 허여해야 하는 이유 포함) 또는

(iii) 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이유

3장
운영 표준

규칙 3.01 – 소유권 및 운영

모든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시설에서 운영되는 업체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여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 외에 해당 업체와 재정적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신원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규칙 3.02 – 협력

면허 소지자와 대리인 및 직원은 공무 수행 중인 위원회,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건축 기사 사무소, 대배심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의 대리인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규칙 3.03 – 기록

(a) 면허 소지자는 각 구매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모든 구매 주류의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각 구매 날짜, 구매 수량, 각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허가된 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며 위원회 위원, 위원회 직원 및 기타 모든 법 집행 담당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b) 허가된 시설에서의 주류 섭취 권한이 부여된 면허 소지자는 모든 주류 판매의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서, 허가된 시설 외부에서 섭취하기 위해 밀봉 포장 또는 용기 형태로 판매한 분량이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록은 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며 위원회 위원, 위원회 직원 및 기타 모든 법 집행 담당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c) 면허 소지자는 모든 직원의 법적 이름, 가명, 주소, 연령, 각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4자리를 포함하는 기록을 시설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허가된 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며 위원회 위원, 위원회 직원 및 기타 모든 법 집행 담당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d) 면허 소지자는 다음 항목을 신청했거나 신청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 시 또는 주에서 신청인에게 부과한 상품, 설비, 재고에 대한 미납 세금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내용으로 재무담당관이 발급한 증명서 및 (ii) 볼티모어 시 순회 재판소에서 발급한 상거래 면허

규칙 3.04 – 맥주통 등록

(a)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 외부에서 섭취하기 위한 최소 15리터(4갤런) 용량의 맥주 용기(예: 파티 볼, 맥주통)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면허 소지자는 주 감사관이 승인 및 배포한 맥주통 등록 양식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가된 시설의 이름과 주소 및 등록 번호가 적힌 이 양식을 맥주통에 부착해야 합니다.

(2) 구매자는 유효한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기입한 등록 양식을 완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a. 생성된 식별 정보에 표시된 구매자 이름 및 주소
   b. 구매자의 생년월일
   c. 구매 날짜

(3) 면허 소지자는 완성된 등록증의 전사본을 맥주통의 구매 명칭 부분에 부착해야 합니다.

(4) 구매자가 맥주통을 반환하면 면허 소지자는 맥주 도매업자에게 맥주통을 반환하기 전에 맥주통에서 등록증 전사본을 제거해야 합니다.

(5) 면허 소지자는 완성된 맥주통 등록증 소책자를 최소 30일 동안 면허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b) 면허 소지자는 관리 및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c) 면허 소지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1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유예/해지될 수 있으며, 두 가지 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d) 구매자가 서명을 한 완성된 등록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규칙 3.05 – 알코올 인지 증명서

(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은 주 감사관이 승인한 공인 알코올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매업체 대상 알코올 교육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4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b) 알코올 인지 증명서 사본은 허가된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공무 수행 중인 위원회 조사관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주/시 법 집행 책임자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규칙 3.06 – 운영 표지 및 시간

(a) 외부 표지판을 포함한 모든 표지판은 시의 토지 이용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사본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두거나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공인 공무원의 요청 시 면허를 제시해야 합니다.

(c) 허가된 시설의 운영 날짜와 시간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의 창이나 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운영 시간을 변경하려는 면허 소지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운영 시간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규칙 3.07 – 조명

(a) **외부 조명:** 면허 소지자는 시설 입구와 출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뚜렷히 비추기에 충분한 외부 조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의 법률에 따라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 시설용 조명으로 섬광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내부 조명**: 면허 소지자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모든 상업용 영역을 충분히 비출 수 있는 내부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규칙 3.08 – 위생 및 안전

(a) 면허 소지자는 주택 및 공동체 개발국과 시 경찰서 그리고 기타 관련 시/주/연방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b) 면허 소지자는 폐기물 및 거부 소재 폐기용 용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항상 용기의 뚜껑을 닫아 두어야 하며 모든 거부 소재를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c) 모든 직원이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어야 함을 나타내는 표지를 면허 소지자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주방과 화장실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합니다.

규칙 3.09 – 화장실 시설 및 건강 관련 규정

(a) A등급 및 A-2등급 면허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시설에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적절한 화장실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b) 면허 소지자는 주/시 보건국의 관련 법률, 규칙,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규칙 3.10 – 통신

(a) 면허 소지자는 정상 작동하는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해당하는 경우), 팩스 번호(해당하는 경우)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b) 면허 소지자는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팩스 번호 변경 후 30일 이내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규칙 3.11 – 주류 배달

(a) **등록 과정**: 주류를 배달하려는 모든 면허 소지자는 배달 전에 면허 소지자의 원본 서명이 포함된 배달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승인 서신을 받아야 합니다. 배달 승인은 면허 소지자의 면허증에 표기됩니다.

(b) **배달 규약 및 제한**:

(i) 각 배달 사원은 면허 소지자 회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소매업체의 배달 사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ii) 주류는 밀봉 포장 또는 용기에 담긴 상태로 배달되어야 합니다. 혼합 음료는 배달할 수 없습니다.

(iii) 배송 물품 배달을 완료하려면 배달 사원이 운송장에 기재된 수신 대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요청해야 합니다.

(1) 21세 이상인 수신 대상자의 서명

(2) 수신 대상자가 21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iv) 배달 사원은 수신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배달을 거부해야 합니다.

(1) 21세 미만인 경우

(2) 이 항의 (2)호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3) 만취 상태로 보이는 경우

(v) 수신 대상자는 배달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각 배달 물품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하며, 이 양식의 사본을 수신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vi) 면허 소지자의 시설 조사 시 원본 배달 양식 및/또는 승인된 판매 전자 기록을 위원회 조사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vii) **온라인 배달 서비스** – 모든 전자 연락 모드(예: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온라인 구매 등)를 통해 고객의 요청 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는 이 절의 내용에 따라 주류를 배달해야 합니다.

(viii) 다른 허가된 시설로 배달할 수 없습니다.

(ix) 시 내에서만 배달할 수 있습니다.

(x) A등급의 와인/맥주 면허 소지자는 와인과 맥주를 배달할 수 있습니다.

(xi) A등급의 맥주/와인/주류 면허 소지자는 모든 유형의 주류를 배달할 수 있습니다.

(xii) B/D등급의 (맥주 전용) 면허 소지자는 맥주만 배달할 수 있습니다.

(xiii) B/D등급의 맥주/와인 면허 소지자는 맥주와 와인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xiv) B/D/BD7등급의 맥주/와인/주류 면허 소지자는 모든 종류의 주류를 배달할 수 있습니다.

(xvi)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주류 배달권을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규칙 3.12 – 일반 복지

면허 소지자는 공동체의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안녕, 안전, 보건, 평온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규칙 3.13 – 병 음료 제공

(a) **정의**: "병 음료 제공"이란 허가된 시설 내에서 섭취하기 위한 용도로 3명 이상의 개인에게 750ml을 초과하지 않는 용량의 병에 들은 발효하지 않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병 음료 제공 시 제한 사항:** 면허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에게 병 음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 시설에 대해 발급된 면허가 시설 내의 병 음료 섭취를 허용하는 경우

(ii) 면허 소지자가 예약된 자리, 전용 바 또는 병 음료 제공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착석한 고객에게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ii) 가능한 경우 고객이 개별 병 음료를 구매해서 섭취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쥬스/토닉/소다수 등의 충분한 희석액, 얼음, 유리컵 등을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경우

(iv) 면허 소지자가 병 음료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게 발효하지 않은 주류를 혼합해 주는 직원을 배정하는 경우

(v) 면허 소지자가 병 음료 서비스 지정 장소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담당자를 배정하는 경우

(c) **병으로 음용 금지:** 병으로 제공되는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은 병에 들은 음료를 그대로 음용할 수 없습니다.

(d) **병을 지참한 고객의 시설 이탈 금지:** 병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는 발효하지 않은 주류가 포함된 병을 구매한 고객이 병을 소지한 채로 시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 **고객이 구매한 병 음료를 면허 소지자가 보관:** 면허 소지자는 고객이 시설 내에서 섭취하려고 병 음료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발효하지 않은 주류를 나중에 해당 시설에서 섭취하도록 보관해 줄 수 있습니다.

(f) **면허 소지자의 책임:**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시설에서 고객의 셀프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과정에서 2B조 및 BLLC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병으로 제공되는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2B조 및/또는 BLLC 규칙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4장
운영

규칙 4.01 – 미성년자

(a)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 또는 타인의 사용 목적으로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b) **미성년자 고용:** 면허 소지자는 주류 판매, 제공, 배달 또는 기타 방식의 처리를 위해 18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 4.02 – 주취 및 약물 중독

(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만취자,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b)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만취자,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허가된 시설에서 주류를 섭취하거나 소지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c) 면허 소지자, 해당 대리인 및/또는 직원은 주류를 판매, 제공, 소지 또는 섭취하기 전에 주류 판매/제공 대상자 또는 허가된 시설에서 주류를 섭취하거나 소지한 사람이 만취 상태가 아니고, 알코올 및/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4.03 – 요청

(a) 면허 소지자는 직원, 대리인 또는 면허 소지자 시설의 고객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허가된 시설 내의 제품 또는 엔터테인먼트용 장치 구매나 사용을 요청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b) 면허 소지자는 오락 또는 엔터테인먼트용 장치의 사용이나 제품 판매를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또는 기타 방식의 대가로 수수료, 사례금 또는 요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2B조 § 6-201(d)(6)(d-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면허 소지자에게는 이 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시설 외부에서 주류 판매 주문을 요청하기 위해 판촉원, 영업 사원 또는 단골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된 시설의 외부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d) 면허 소지자는 주류 주문을 요청하기 위해 허가된 시설 외부에서 음향을 재생하는 확성기나 기타 음향 재생/확성 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칙 4.04 – 무료 음식물 및 상품

(a) 이 관의 (i)항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면허 소지자는 주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무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i) 면허 소지자는 시설 내의 주류 섭취와 관련하여 무료 치즈, 전채 요리, 과자, 프레첼, 견과류 및 유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시합 진행이나 장치 조작의 상품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규칙 4.05 – 운영 금지 시간

(a)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 회사의 직원, 고객, 직원 가족이나 대리인을 포함한 어떤 사람도 주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시간 동안 허가된 시설에서 주류를 섭취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b) 주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시간 동안에는 시설의 어떤 구역에서도 주류를 판매, 배부, 제공 또는 증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 4.06 – 주류 용기

(a) 면허 소지자는 2B조 § 8-203(e)항에 따라 리필 가능 용기로 분류되는 용기를 제외하고는 주류를 담은 병 또는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리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리필 가능 용기의 내용물을 희석하거나 강화하거나 다른 물질을 섞을 수 없습니다.

(b) 면허 소지자는 맥주나 와인을 제외한 주류를 시설 내에서 섭취하기 위해 병에 든 상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거나 줄 수 없습니다.

규칙 4.07 – 개방된 용기 및 주류의 불법 소지/사용

(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은 적절하게 코르크로 다시 밀봉하거나 뚜껑을 닫은 병 속의 와인을 제외하고는 주류를 소지한 상태로 어떤 사람도 허가된 시설을 이탈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b) 면허 소지자는 고객이 와인 병을 구매 후 식사하면서 병에 든 와인을 일부만 섭취한 다음 면허 소지자 본인이나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 와인 병을 직접 코르크로 밀봉하거나 뚜껑을 닫았다면 고객이 해당 와인 병을 소지한 상태로 허가된 시설을 이탈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c)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시설 또는 허가된 시설이 입점한 건물의 모든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주류를 섭취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d)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은 어떤 사람도 포장 판매 구역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며, 고객이 해당 허가된 시설에서 주류를 섭취하거나 개봉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e) 면허 소지자는 시설 내외부 섭취용 품목을 구매하는 고객이 시설 앞을 이동하면서 허가된 시설 바로 앞의 일반 통행로에서 주류를 공개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규칙 4.08 – 도매업자와의 관계

(a)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자를 제외한 어떤 업체에서도 주류를 구매하면 안 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 절에 따라 구매하지 않은 이상 면허 소지자는 주류를 허가된 시설에 보관하거나 보관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b) (1) 이 관의 (2)항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면허 소지자는 제조업체, 도매업자 또는 주류 유통 분야 종사자로부터 주류 사은품, 신문 또는 기타 정기 간행물의 협찬 광고 또는 모든 유형의 선물이나 리베이트를 요청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수락할 수 없습니다. (2) 표지, 표시물 또는 기타 형태의 광고나 가치가 $150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양조업자 또는 맥주 도매업자에게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맥주 도매업자가 직접 제조한 표지의 경우 가치가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c) 면허 소지자는 주류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자의 사업과 금전적인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제조업체 또는 소매업자는 면허 소지자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규칙 4.09 – 드라이브 인 판매점

드라이브 인 또는 주차 고객 배달 서비스 방식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면허 소지자의 허가된 시설 내 어떤 위치에서도 주류를 판매, 제공 또는 섭취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판매점이 시설 내의 영구 건물 내에 있으며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규칙 4.10 - 허위 진술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주류 면허 최초 신청, 갱신 신청, 서신 또는 서면 진술서, 위원회나 공식 조사를 진행하는 기타 모든 위원회 대리인에게 증언 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규칙 4.11 – 차별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은 인종, 신념, 종교, 신체적/정신적 장애, 피부색, 성별, 국적, 연령, 직업, 혼인 여부, 정치적 견해,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성 정체성 표현 또는 개인 외모를 기준으로 면허 소지자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편의, 이점, 시설,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거부하거나 철회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복장 규정에 대한 통지를 시설 내에 게시하는 경우 적절한 복장에 대한 규정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4.12 – 도박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허 소지자나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은 허가된 시설을 어떤 형식의 마권업 또는 도박용으로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규칙 4.13 - 약물 및 불법 마약

(a) 면허 소지자나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은 허가된 시설을 메릴랜드 주해 규정에서 정의하는 통제 대상 위험 물질의 판매/양도, 판매/양도 장소 제공 또는 소지를 위해 허용할 수 없습니다.

(b) 면허 소지자나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은 허가된 시설에서 메릴랜드 주해 규정으로 정의된 어떤 유형의 통제 대상 위험 물질도 사용, 소지, 판매하거나 사용, 배부, 판매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규칙 4.14 - 무허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a) 면허 소지자는 시와 본 위원회에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또는 특별 오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예로는 음악 활동(노래방 포함), 무대극(스탠드업 코미디), 연극, 가극, 무용, 마술, DJ(확성기 마이크와 장비를 사용하는 공연) 및 유사 행위가 포함됩니다.

규칙 4.15 – 성적 행위 및 외설적 행위

(a)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시설을 성적 행위에 사용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면허 소지자, 직원, 고객 또는 단골은 누구에게도 성 매매 또는 기타 부도덕한 목적의 행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b) 면허 소지자는 어떤 사람도 유방이나 하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연극이나 기타 공연에 출연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시설에서 이와 같은 행위, 전시 또는 불법적 공연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c) 본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성인용 엔터테인먼트 면허를 발급받은 면허 소지자에게는 이 규칙의 (b)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칙 4.16 – 불법 행위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시설에서 연방/주/지역 법규, 법률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공공의 안녕, 안전, 보건, 복지, 평온 또는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규칙 4.17 – 저장

(a) 면허 소지자는 메릴랜드 규정 2B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 창고, 정부 통제 창고 또는 면허 내용에 포함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소에도 주류를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b) 면허 소지자는 지면 위로 15cm(6인치)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보관하지 않는 이상, 시설 내에 주류를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규칙 4.18 – 변경

(a) 면허 소지자는 허가된 시설을 위원회의 허가 없이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주류 배부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b) 면허 소지자는 시로부터 필수적인 허가와 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된 시설에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규칙 4.19 – 선물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은 볼티모어 시 윤리법에서 제시하는 품목 이외의 수수료, 보수 또는 선물을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대리인이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규칙 4.20 - 면허 유형별 금지 행위

(a) **A등급/A-2등급: 시설 내 섭취 금지**: A등급/A-2등급 면허 소지자는 2B조에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설 외부 섭취용으로 주류를 구매한 고객이 업무 운영 시간 중에는 어떤 때라도 시설이 위치한 곳에서 해당 주류를 섭취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b) **B등급 면허: 정상 운영되는 주방:** B등급 면허 소지자는 시설에 다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i) 일반 고객에게 제공할 온/냉 식사류를 준비하고 제공하도록 모든 설비와 기구가 갖춰진 정상 운영되는 주방. 주방에는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ii) 다양한 식사류를 제공함을 보여주는 메뉴. 메뉴에서 주문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충분한 식재료가 시설 내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iii) 위원회 조사관 또는 기타 법 집행 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시할 식재료 구매 송장

(c) **BD7등급 면허: 항상 개방되고 운영되는 주점**

(i) **정의**: 아래에는 이 규칙에서 포함된 용어와 해당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1) "바"란 술집용 높은 의자나 일반 의자가 배치된 구성 방식에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섭취할 주류를 수시로 제공하는 카운터를 의미합니다.

(2) "포장 제품 판매 영역"이란 (1) 포장 제품을 주로 판매하며 (2) 일반적으로 시설 내 제품 섭취는 이루어지지 않는 허가된 시설 내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3) "주점"이란 고정된 경계로 일반 고객용 영역과 구분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라운지 영역 또는 바로, 시설 내에서 섭취할 주류를 항상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4) "주점 운영"에는 모든 BD7 면허가 포함됩니다.

(a) 승인된 개별 포장 제품 판매 매장/부서/구역을 이전에 운영한 BD7 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신규 포장 제품 판매 영역을 건축할 수는 없더라도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b) 대상 시설이 본 규칙에 정의된 주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BD7등급 면허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ii) **금지 사항:** BD7 면허 소지자는 포장 제품 판매 영역이 개방되고 운영 중일 때에는 허가된 시설 내의 정상 운영되는 주점 구역이 시설 내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고객이 해당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1) 정상 운영되는 주점에는 술집용 높은 의자나 일반 의자가 배치된 구성 방식에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섭취할 주류를 바텐더가 항상 제공하는 카운터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 내에서 음료를 섭취하고자 하는 고객과 바텐더를 분리하는 경계나 칸막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d) C등급 면허 소지자: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음: C등급 시설의 경우 허가된 시설에 일반인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C등급 시설은 회원용 서비스를 위해 개방 및 운영됩니다. 따라서 모든 C등급 면허 소지자는 시설 부지에 다음 항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위원회 조사관 또는 기타 법 집행 담당자의 조사 시 다음 항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i) 회원과 회원 일행이 클럽을 방문한 시간이 기록된 일별 방문 기록지
(ii) 회원 자격과 클럽에서 활동 중인 회원의 회비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된 회원 기록

부록 1

등급 유형	설명	연회비	운영 날짜/시간
포장 판매 – A등급 – 시설 외부 판매 전용			
A등급	맥주/와인	$110.00	오프세일 포장 제품 – 시설 내 섭취 불가 – 주 6일, 오전 6시~자정. 추수감사절~1월 1일 사이의 일요일(각 일요일에 대한 특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을 제외하면 일요일 판매는 안 됩니다.
A등급	맥주/와인/주류	$858.00	
A-2등급	맥주/와인/주류	$858.00	오프세일 포장 제품 – 주 6일 – 오전 9시~자정. 추수감사절~1월 1일 사이의 일요일(각 일요일에 대한 특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을 제외하면 일요일 판매는 안 됩니다.
음식점 및 호텔 – B등급 – 시설 내외부 판매			
B등급	맥주/와인	$165.00	주 7일, 오전 6시~오전 2시
B등급	맥주/와인/주류	$1,320.00	
B등급	LBHM 호텔/모텔	$6,500.00	
주점, 공연장, 경마장 – 기타 등급 – B등급 – 공연장/경마장의 경우 시설 내에서만 판매(BD7의 경우 시설 내외부 판매)			
BD7등급	맥주/와인/주류	$1,320.00	7일 – 오전 6시~오전 2시. * 파크 하이츠 재개발 지역의 경우 영업 시작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2B조 §8-203 참조*
B등급	공연장 면허	$12,000.00	7일, 오전 6시~오전 2시. 경기장, 공연장, 대규모 복수 바 시설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B등급	경마장	$55.00/일	7일, 발급 대상 날짜 오전 6시~오전 2시
클럽 및 친목 조직 – C등급 – 시설 내에서만 판매			
C등급	맥주/와인	$82.50	7일, 오전 6시~오전 2시
C등급	맥주/와인/주류	$550.00	
주점 및 자체 제조 맥주 판매점 – D등급 – 시설 내외부 판매			
D등급	맥주/와인	$165.00	6일, 오전 6시~오전 1시. *2B조 §11-503항에 따라 D등급에 대해 "매년 일요일 4회"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D등급	맥주/와인/주류	$825.00	
D등급	맥주(양조)	$150.00	
기타 면허 유형 – 카지노 및 골프 코스 – 시설 내에서만 판매			
LM-G등급	골프 코스	$600.00	시설이 개방되고 운영 중일 때는 항상 판매 및 섭취가 허용됨
VLF등급	비디오 도박 시설(카지노)	$15,000.00	